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97
----------	------

2025년 1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0월 20일 김기덕 의원(찬성 13인)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기덕 의원)

1. 제안이유

- 신체, 정신적 손상, 기능상실에 의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의사소통 장애인의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축 사업 지원 및 정당한 편의 지원 근거 마련은 물론, 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학부모,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상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 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및 정의상 규정한 정당한 편의 지원 조항 규정 (안 제8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의 동등한 활동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보완대체의사소통 센터의 업무에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축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증진시키고자 뜻의되었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관련 현황

- 의사소통은 모든 시민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임. 특히 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의사소통 지원 여부에 따라 행정·의료·교육 등 주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정보 접근이 제한되기도 함.
- 의사소통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¹⁾에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접역, 접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동법 제23조²⁾에서는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 조례 제2조에서는 “의사소통”을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함.
- 서울시의 등록장애인은 ‘23년 국가통계 기준 389,795명이며 그 가운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약 142,436명 (36.54%)으로 파악됨.

〈표〉 서울시 의사소통에 어려운 장애인 유형 현황

(단위: 명, %)

市 등록장애인	유형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계	뇌병변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389,795 (100)	<u>142,436</u> (36.54)	38,940 (9.99)	63,858 (16.38)	3,308 (0.85)	28,025 (7.19)	8,305 (2.13)

※서울시 내부자료('23년 국가통계 기준이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잠재적 대상을 포함함)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정당한 편의의 규정 (안 제2조)

- 동 조례개정안에서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이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2항에서 정의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의 정의를 준용함으로써 조례 내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사소통권 보장을 위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2) 보완대체의사소통 사업 체계 구축 (안 제8조)

- 동 조례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장애인 의사소통 수단을 구체화하고,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정당한 편의지원에 대하여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u>수단의 개발·보급</u>에 관한 사항</p> <p>2. ~ 4. (생략)</p> <p>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u>사항</u></p> <p>③ · ④ (생략)</p>	<p>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 <u>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 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지원</u>-----</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 <u>사항 및 정당한 편의 지원</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서울시에서는 2020년부터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정보 제공,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시스템 개발·보급등의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 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함.

〈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현황

수탁기관	위탁기간	소재지	종사자 수	소요예산
(사)한국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23.9.1.~ '26.8.31.	영등포구 선유로9길10, 문래SKV1센터 1620호	5명	410,301천원 (시비 100%)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사업 주요내용과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제공·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종재서비스 제공 - 사전·사후평가 및 사례관리, 개인별 지원내용 DB구축
홍보 및 의사소통 정보플랫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제작·배포 - 국내외 의사소통 관련 정보제공 및 공유 - 센터 사업성과 및 서비스 이용데이터 수집·관리 - 의사소통권리증진대회 개최
의사소통 환경구축 및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 교육 - 기관 맞춤형 찾아가는 의사소통 컨설팅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 의사소통 장애인 당사자 커뮤니 모임 진행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협업시스템 마련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시스템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판 제작 웹페이지 [커뮤니판] 유지·보수 - 시각기반 의사소통앱 [커뮤니샷] 유지·보수

	- 채팅기반 의사소통앱 [커뮤니톡] 유지·보수 - 커뮤니 그림상징 추가 개발 - 전자식·비전자식 보완대체의사소통 교육 및 사례모집 - 의사소통 표식의류 지원 시범사업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제공·연계	초기상담 및 요구분석
	서비스 제공·연계
	사례관리
	사후평가
	전문가/기관 간담회
	서비스 만족도 조사
의사소통 환경구축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
	기관 컨설팅
	의사소통 지원 매뉴얼
	커뮤니모임
의사소통 스마트 지원 시스템 개발 제공	의사소통 커뮤니상징
	시작장면 기반 의사소통앱
홍보 및 정보플랫폼	온·오프라인 홍보
	의사소통 정보플랫폼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센터 운영 내실화	자문위원회
	이용자간담회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중요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단”이라는 문구를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프로그램 등 의 개발·보급·지원”으로 구체화한 것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적절한 개정으로 보임.

(3)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추가해 명문화하고 있음.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제9조 (생 략)	<u>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u>

다. 집행부서 의견 : 원안동의

- 집행부서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며, 서울시의 위탁기관인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3 종합의견

- 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보장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접근·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의사소통 지원은 단순히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나 보조공학기술의 제공에 국한되지 않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인적 지원과 사회적 환경을 함께 변화시키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³⁾
- 현행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또한 AAC 상징체계 개발, 단말기 및 프로그램 보급,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현행 조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 본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 제공 정의를 신설하여 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수단을 구체화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하겠음.

3) 부산복지개발원(2021). 『부산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97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기덕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김경, 김규남,
김영철, 김원태, 김형재,
민병주, 서상열, 아이수루
, 유정희, 이민옥, 이영실,
최기찬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신체, 정신적 손상, 기능상실에 의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의사소통 장애인의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축 사업 지원 및 정당한 편의 지원 근거 마련은 물론, 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학부모,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상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 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및 정의상 규정한 정당한 편의 지원 조항 규정 (안 제8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수단의 개발·보급”을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항”을 “사항 및 정당한 편의 지원”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p>
<p>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p> <p>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생 략)</p> <p>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u>수단의 개발·보급</u>에 관한 사항</p>	<p>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 <u>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u></p>

	· 보급 · 지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u>사항</u>	5. ----- ----- <u>사항 및 정당한 편의 지원</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질적인 재정소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센터업무 규정) 안 제8조에 센터 업무수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추가 비용발생의 여지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복지실 장애인복지과 등) 자료 및 누리집 등 확인하였으나, 검토결과 현재 센터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 관련 사업을 **기추진1)**하고 있어 향후 관련사업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²⁾ 별다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보완대체의사소통 : 말이나 글을 사용해 의사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스처, 그림, 사진, 수화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음
- (협력체계 규정)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규정으로 업무협조(MOU체결) 관련 비용은 통상적으로 현수막, 입간판, 업무 협약서 제작 등과 같은 일회성 소액지출이므로 이례적으로 단일편성(가령 협력 체계가 사업운영의 핵심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별다른 재정소요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재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복지실 2025년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 410,301천원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1월~2025.12월
- 사업내용
 -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연계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플랫폼 운영
 - 지역사회 장애인 의사소통 환경구축

2) [사업확대 미고려] 통상 기추진사업에 대한 사업 근거규정은 ① 확대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발생 여부가 달라지고, 나아가 ② 다양한 지출요인에 따라 적정 확대규모가 정해지므로 해당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지출계획, 예산 한정성, 재정투입 우선순위 등과 같은 **재정지출 영향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이에 해당 사안 또한 서울시 관련부서(복지실 장애인복지과 등)에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현재로서 별다른 확대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계 고려사항에서 제외함